

S & S New letter on Mar 2009

<Currently issued Official Letters>

The Ministry of Finance has just issued Official Letter No. 807 to clarify some matter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Circular 27. Key points related to employment income in this Official Letter include:

No deferral of PIT payments is allowed for expatriate employees who leave Vietnam before 30 June 2009,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tax resident or non-resident.

In case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approve an exemption of PIT, Tax Departments AND employers shall coordinate and be responsible for recovery of the PIT which was not paid during this period.

The PIT liabilities of employees on net packages are also eligible for deferral.

<소득세 납부유예관련>

2009년 3월 10일, MoF는 소득세 납부유예와 관련한 official letter를 발표하여 좀 더 자세한 guideline를 제시함.

- 외국인파견자로서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베트남을 떠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동 근로자가 세무학적 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함
- 만약 5월 국회에서 면제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세무서와 고용자는 함께 협조하고 그동안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급여가 net basis로 책정된 경우에도 이러한 유예조치는 적용됨 (주의: 이러한 경우 PIT를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도 불분명함)

<2008년도 소득세 finalization관련 사항>

2월 18일에 발표된 official letter 1823에서는 비록 2008년도 근로로 인해서 지급받은 보너스 등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유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로 인하여 2008년도 소득세 정산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음.

우리가 확인한 GDT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2008년도 소득세의 정산은 CASH 기준임. 따라서 2008년도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2008년도의 소득으로서 3월말까지 소득세 정산대상이며, 2009년도에 지급받은 2008년도 근로에 대한 보너스 등은 2009년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2008년도의 소득세 정산대상이 아님
- 2007년도 소득세 정산은 CASH기준이 아니었으므로 2008년도 초에 지급된 보너스 등은 이미 2007년도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정산이 끝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2008년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결과적으로 2008년도의 monthly income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약간 작게 계산될 것임

<Net basis 소득세의 법인세법 상 비용인정 여부>

호치민 tax office에서 발표된 안내문에 따르면 2008년도 법인세 계산시에는 net basis로 노동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됨. 그러나 여전히 2009년 이후에도 비용으로 인정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임.